KOSHA GUIDE

C - 105 - 2021

#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

2021. 12.
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

#### 안전보건기술지침의 개요

○ 작성자 : (사)한국건설안전협회 안무영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건설안전단

○ 제·개정 경과

- 2016년 11월 건설안전분야 제정위원회 심의(제정)

- 2021년 10월 건설안전분야 표준제정위원회 심의(개정)

- 관련규격 및 자료
- KOSHA GUIDE C-39-2011 굴착공사 안전작업 지침
- 건설기계 시공안전기준 제정에 관한 연구(한국건설기술연구원)
- KS B ISO 7135:2020 토공기계 유압굴삭기 용어 및 상용 사양
- KS B ISO 6165:2019 토공기계 기본 식별과 용어 및 정의
- 관련법규·규칙·고시 등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96조~제206조(차량계 건설기계 등)
-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338조~제347조(굴착작업 등의 위험방지)
- 운반하역표준안전작업지침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26호)
- 굴착공사표준안전작업지침(고용노동부고시 제2012-100호)
- 건설기계안전기준에 관한 규칙(국토교통부령 제882호) 제10조~제12조
-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(고용노동부고시 제2020-53호)
- 기술지침의 적용 및 문의
- 이 기술지침에 대한 의견 또는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(www.kosha.or.kr) 안전보건기술지침 소관 분야별 문의처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- 동 지침 내에서 인용된 관련 규격 및 자료 등에 관하여 최근 개정 내용이 있는 경우 동 지침에 우선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공표일자 : 2021년 12월

제 정 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

### 굴착기 안전보건작업 지침

#### 1. 목 적

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(이하"안전보건규칙"이라 한다) 제196 조~206조(차량계 건설기계)의 규정에 의거 굴착기를 사용한 토사의 굴착·상차·파쇄·정지작업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비의 침하·전도·추락·협착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작업단계별 안전작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#### 2. 적용범위

이 지침은 굴착기를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토사의 굴착·상차·파쇄·정지작업 등에 적용한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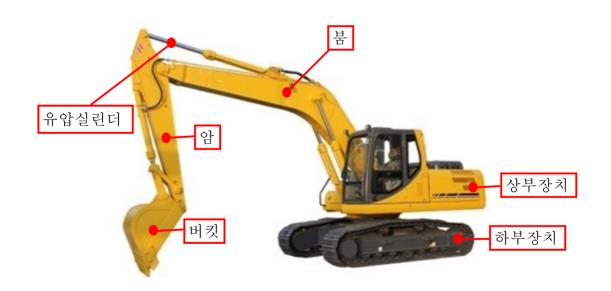
#### 3. 용어의 정의

- (1) 이 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  - (가) "굴착기(Excavator)"라 함은 토사의 굴착 및 상차를 주목적으로 하는 건설기계로서, 하부구조(Undercarriage)의 움직임 없이 360° 회전할 수 있으며 작업용도에 따라 선택작업장치(Attachment)의 탈·장착이 가능하고주행방식에 따라 무한궤도식과 타이어식으로 분류되며 건설기계 관리법적용을 받는 장비이다.
  - (나) "선택작업장치(Attachment)"라 함은 굴착기의 암(Arm)과 유압실린더 (Hydraulic Cylinder) 링크에 부착한 퀵커플러(Quick Coupler)에 작업목 적에 따라 장착하는 버킷(Bucket), 브레이커(Breaker), 크램셜(Clamshell) 등의 작업장치를 말한다.

(2)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이 지침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「산업안전보건법」, 같은법 시행령, 같은법 시행규칙,「산업안전보건기준에관한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#### 4. 굴착기의 종류 및 선택 작업장치의 분류

- (1) 굴착기의 주행을 위한 하부장치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.
- (가) 무한궤도식 굴착기(Crawler Type) 하부장치의 주행부에 무한궤도 벨트를 장착한 <그림 1>과 같은 자주식 굴착기로서, 견인력이 크고 습지, 모래지반, 경사지 및 채석장 등 험난한 작업장 등에서 작업능률이 높은 장비이다.



<그림 1> 무한궤도식 굴착기(Crawler Type)

### (나) 타이어식 굴착기(Wheel Type)

하부장치의 주행부에 타이어를 장착한 <그림 2>와 같은 자주식 굴착기로서, 주행속도가 30-40km/hr 정도로 기동성이 좋아서 이동거리가 긴 작업장에서 는 무한궤도식 굴착기보다 작업 능률이 높은 장비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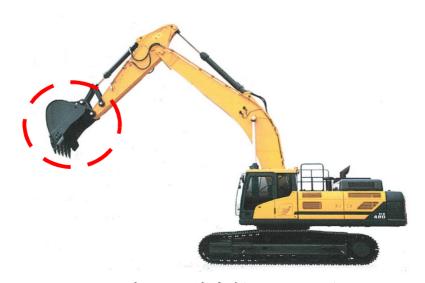


<그림 2> 타이어식 굴착기(Wheel Type)

(2) 굴착기의 선택작업장치에 따른 분류는 다음과 같다.

#### (가) 굴착버킷(Hoe Bucket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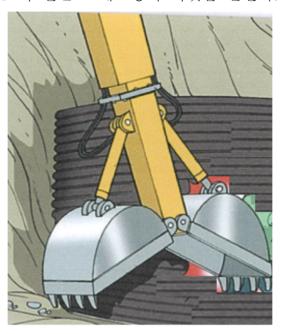
굴착기에 장착되는 기본적인 작업장치로 토사의 굴착 및 상차에 이용되는 <그림 3>과 같은 버킷을 말한다.



<그림 3> 굴착버켓(Hoe Bucket)

#### (나) 클램쉘 버킷(Clamshell Bucket)

암과 유압실린더의 링크에 장착되어 수직방향으로 굴착 또는 클램쉘 작업을 하는 <그림 4>와 같은 조개모양의 버킷을 말한다.



<그림 4> 클램쉘 버킷(Clamshell / Bucket)

#### (다) 셔블버킷(Shovel Bucket)

장비의 진행방향으로 굴착을 하는 작업장치로서 토사를 퍼올리는 형태의 <그림 5>와 같은 버킷을 말한다.



<그림 5> 셔블버킷(Shovel Bucket)

#### (라) 브레이커(Breaker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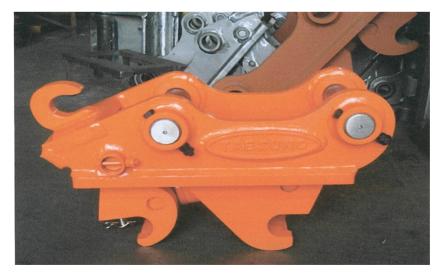
콘크리트, 암석 등의 파쇄, 소할에 이용되는 <그림 6>과 같은 작업장치를 말한다.



<그림 6> 브레이커(Breaker)

#### (마) 퀵커플러(Quick Coupler)

암과 유압실린더의 링크에 장착되어 버킷, 브레이커 등의 작업장치를 신속하게 장착하거나 분리하는데 사용하는 <그림 7>과 같은 연결장치를 말한다.



<그림 7> 퀵커플러(Quick Coupler)

#### (바) 블레이드(Blade)

도랑(배수구, 측구)을 메우거나 소량의 평탄화 작업에 사용하는 <그림 8>과 같이 주행 하부장치에 장착된 작업장치를 말한다.



<그림 8> 블레이드(Blade)

### 5. 굴착기 작업중 위험요인 및 안전대책

## 5.1 중점 유해·위험 요인 파악

재해 유형	위험 요인	안전 대책
전도·전락	비탈면 굴착중 토사붕괴에 의한 장비 전도·전락, 매몰사고 발생	굴착면 기울기 유지 (설계도서의 기울기 준수)
	장비 운행중 노면폭 부족에 따른 장비 전도·전락사고 발생	노면폭 확보 및 지반상태 확인 강우시 작업금지 (경사지)
	중량물 인양 작업중 전도사고 발생	장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
	무자격 운전원의 장비조작 미숙 으로 전도 및 전락사고 발생	운전원 외 장비조작 금지

재해 유형	위험 요인	안전 대책
홍	작업반경 내 근로자 접근 및 유 도자 미배치에 따른 충돌사고 발 생	
	후진경보기 미작동 및 후사경 파 손에 따른 충돌사고 발생	후진경보기(Backward Alarm) 작동 상태 확인 및 후사경 교체 정비
	시동중 운전자가 운전석 이탈에 의한 장비의 갑작스러운 이동으 로 충돌사고 발생	
협 착	퀵커플러 안전핀 고정상태 미체 결 및 불량에 의한 버킷 탈락으 로 협착사고 발생	
감 전	붐(Boom)을 올린상태에서 장비 운행중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 사고 발생	붐을 올린상태에서 운행 금지 및 고압선 절연 방호 설비 유·무 확인

### 6. 굴착기 안전작업 절차

절 차 준수사항

6.1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 6.1.1 굴착기 작업 시 고려사항

6.2.1 작업 전 준수사항 6.2.2 작업 중 준수사항 6.2.3 작업 종료시 준수사항

#### 6.1 작업계획 수립 및 검토

#### 6.1.1 굴착기 작업시 고려사항

- (1) 굴착기 작업 안전 보건 계획은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유해·위해 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·위험 요인에 대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(빈도)과 중대성(강도)을 추정·결정하고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- (2) 위험성평가는「고용노동부고시 제 2014-48호 사업장 위험성 평가에 관한 지침」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.
- (3) 굴착기 선정시 고려사항
- (가) 굴착기는 작업여건, 작업물량, 운반장비의 조합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.
- (나) 굴착기와 선택작업장치는 작업 목적에 적합한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.
- (다) 굴착기는 운전자 보호를 위하여 운전석에 헤드가드(Head Guard)가 설치 되 기종을 선정하여야 한다.

#### 6.2 작업 절차별 유해 위험 요인

#### 6.2.1 작업 전 준수 사항

- (1) 관리감독자는 운전자의 자격면허(굴착기 조종사 면허증)와 보험가입 및 안전 교육 이수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. (무자격자 운전금지)
- (2) 운전자는 굴착기 운행전 장비의 누수, 누유 및 외관상태 등의 이상 유·무를 확인하여야 한다.
- (3) 운전자는 굴착기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안전장치(전조등, 후사경, 경광등, 후방 협착방지봉, 전·후방 경고음 발생장치(전진, 후진 경고음 구분), 운전석 내에서 운전자의 후방을 감시할 수 있는 카메라 등)의 부착 및 작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.

- (4) 운전자는 굴착기는 비탈길이나 평탄치 않은 지형 및 연약지반에서 작업을 수행하므로 작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에 의한 전도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지력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지반의 상태와 장비의 이동경로 등을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.
- (5) 운전자는 작업 지역을 확인할 때 최종 작업 방법 및 지반의 상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, 예상치 않은 위험 상황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리감독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- (6) 운전자는 작업 반경 내 근로자 존재 및 장애물의 유·무 등을 확인하고 작업하여야 한다.
- (7) 운전자는 작업 전 <그림 9>와 같은 퀵커플러 안전핀의 정상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자동으로 안전핀을 고정하는 자동 퀵커플러 부착 장비 사용시에는 안전장치에 대한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 선택작업장치의 탈락에 의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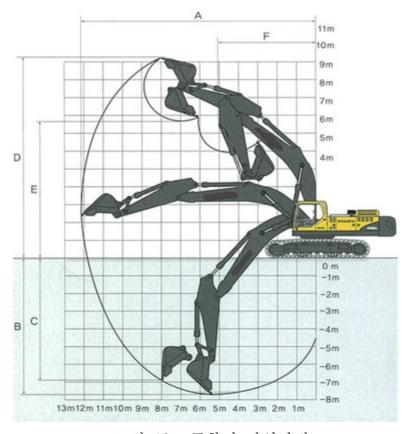
<그림 9> 퀵 커플러 안전핀 설치 상태

(8) 운전자는 장비의 안전운행과 사고방지를 위하여, 굴착기와 관련된 작업을 수행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- (가) 관리감독자의 지시와 작업 절차서에 따라 작업할 것
- (나) 현장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 참여할 것
- (다) 작업장의 내부규정과 작업 내 안전에 관한 수칙을 준수할 것

#### 6.2.2 작업 중 준수사항

- (1) 운전자는 제조사가 제공하는 장비 매뉴얼(특히, 유압제어장치 및 운행방법 등)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.
- (2) 운전자는 장비의 운행경로, 지형, 지반상태, 경사도(무한궤도 100분의 30) 등을 확인한 다음 안전운행을 하여야 한다.
- (3) 운전자는 굴착기 작업 중 <그림 10>와 같은 굴착기 작업반경 내에 근로자 의 유·무를 확인하며 작업하여야 한다.



<그림 10> 굴착기 작업반경

- (4) 운전자는 조종 및 제어장치의 기능을 확인하고, 급작스런 작동은 금지하여야 한다.
- (5) 운전자가 작업 중 시야 확보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도자의 신호에 따라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.
- (6) 운전자는 굴착기 작업 중에 고장등 이상 발생시 작업 위치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한다.
- (7) 운전자는 경사진 길에서의 굴착기 이동은 저속으로 운행하여야 한다.
- (8) 운전자는 경사진 장소에서 작업하는 동안에는 굴착기의 미끄럼 방지를 위하여 블레이드를 비탈길 하부 방향에 위치시켜야 한다.
- (9) 운전자는 경사진 장소에서 굴착기의 전도와 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붐의 급격한 선회를 금지하여야 한다.
- (10) 운전자는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11) 운전자는 다음과 같은 불안전한 행동이나 작업은 금지하여야 한다.
- (가) 엔진을 가동한 상태에서 운전석 이탈을 금지할 것
- (나) 선택작업장치를 올린 상태에서 정차를 금지할 것
- (다) 버킷으로 지반을 밀면서 주행을 금지할 것
- (라) 경사진 길이나 도랑의 비탈진 장소나 근처에 굴착기의 주차를 금지할 것
- (마) 도랑과 장애물을 횡단시 굴착기를 이동시키기 위하여 버킷을 지지대로의 사용을 금지할 것
- (바) 시트파일(Sheet Pile)을 지반에 박거나 뽑기 위해 굴착기의 버킷 사용을 금지할 것

- (사) 경사지를 이동하는 동안 굴착기 붐의 회전을 금지할 것
- (아) 파이프, 목재, 널빤지와 같이 버킷에 안전하게 실을 수 없는 화물이나 재료를 우반하거나 이동하기 위해 굴착기의 버킷 사용을 금지할 것
- (12) 운전자는 굴착·상차 및 파쇄 정지작업외 견인·인양·운반작업 등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.
- (13) 운전자는 작업중 지하매설물(전선관, 가스관, 통신관, 상·하수관 등)과 지상 장애물이 발견되면 즉시 장비를 정지하고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한 다음 작업지시에 따라 작업하여야 한다.
- (14) 운전자는 굴착기에서 비정상 작동이나 문제점이 발견되면, 작동을 멈추고 즉시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하며, "사용중지" 등의 표지를 굴착기에 부착하고 안전을 확인한 다음 작업하여야 한다.

#### 6.2.3 작업 종료 시 준수사항

- (1) 운전자는 굴착기를 주차할 때 통행의 장애 및 다른 현장 활동에 지장이 없는 평탄한 장소에 해야 하며, 불가피하게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에는 구름 방지 조치 등 굴착기가 넘어지거나 굴러 떨러짐으로써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.
- (2) 운전자는 굴착기를 정지시키기 전에 굴착기의 선택작업장치를 안전한 지반에 내려놓아야 한다.
- (3) 운전자는 굴착기의 엔진을 정지하고, 주차브레이크를 밟은 다음 엔진 전환 키를 제거하고, 창문과 문을 닫아 잠근 다음 운전석을 이탈하여야 한다.
- (4) 운전자는 굴착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<표 1>을 활용하여 일일점검과 예방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.

## <표 1> 굴착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

구 분	점검사항	비고
1. 안전장치 설치 및	- 퀵커플러 안전핀 체결여부 확인	
	<ul><li>전조등 및 후진경보장치, 후면, 협착방지봉,</li><li>전후방 경고음, 후방카메라 등 작동상태</li></ul>	
작동상태	- 소화기 및 고임목 구비·사용상태	
2. 장비의 이상유무 확인	- 장비 외관 및 누수·누유 상태 확인	
	- 운전자의 시야확보	
	- 붐(암)유압장치, 선회장치 등의 이상 유·무	
	- 무한궤도 트랙, 슈 등의 이상 유·무	
	- 타이어 손상·마모 상태 확인	
	- 운전석 조작장치 및 제동장치 이상 유·무	
3. 예방정비 유무 4. 운전자격 적정여부	- 장비의 일일 점검 및 예방 정비 실시여부	
	- 장비의 수리·점검사항 등 이력관리 상태	
	- 운전원 면허 자격 여부 (3톤미만: 소형건설기계 조종교육 이수, 3톤이상: 건설기계조종시면헤	
5. 작업계획 서	- 작업장의 지형, 지반 등 사전조사 여부	
	- 작업계획서 작성 적정여부	
·	- 정기검사 실시여부(3톤 이상)	
	- 유도자 및 신호수 배치(작업지휘자) 유무 확인	
6.	- 상·하 동시작업 금지	
안전작업 을 위한 준수사항	- 버킷에 근로자 탑승금지	
	- 노폭의 유지, 노견(굴착면, 경사면 포함) 무너짐 방지 및 지반 침하방지조치	
	- 운전원이 운전석 이탈 시 버킷을 지상에 내려놓기	
	- 양중 및 운반·하역작업 사용금지	

# 지침 개정 이력

□ 개정일 : 2021. 12.

○ 개정자 :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총괄본부 건설안전단

○ 개정사유 :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(굴삭기→굴착기) 및 굴착기

운용 시 작업자와의 충돌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 추가

○ 주요 개정내용

- 지침 전체 용어 변경(굴삭기→굴착기)

- 작업 전 운전자의 확인사항에 전·후진 경고음 및 카메라 등의 부착 및 작동여부 확인 준수 추가
- <표1> 굴착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전면수정